

문서번호	기획조정실-6515
보존기간	영구
결재일자	2017.09.26.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이사장 방침 제 130호

★선임	팀장	기획조정실장	경영전략본부장	이사장
협 조	상임감사			

---

## 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관련 이사회 부의안 보고

---

2017.

# 부 의 안

제517회 이 사 회			
일 자	2017. 10. 19	의안번호	제1197호
의 제	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		
구 분	의 결 사 항		

○ 제 안 자 : 기획조정실장

○ 주 문 : 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한다.

○ 제안사유

- “사후추인”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선집행 후보고 문제 방지 및 당연직 이사 위임장 서식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市 규정정비컨설팅 권고사항 반영

〈 市 규정정비 컨설팅 ('17.6월) 〉

※ 권고사항

- ⇒ ① “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”의 해석에 따라 “부의절차”에서 정한 기한과 집행시한만 비교하여 먼저 집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‘집행 후 추인’이 가능한 경우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한하거나,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’ 하는 등 다른 방안으로 보완해야 할 것을 권고
- ⇒ ② 「민법」 제62조에 따라 당연직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“특정한 행위”를 대리하는 것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별지 위임장 서식 등에 보완

○ 의결사항 : 주문과 같음

○ 참고사항

## 1. 제안근거

- 市 공기업담당관-9317(2017.7.25.)호 「투자·출연기관 규정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후속조치」
- 기획조정실-5410(2017.8.4.)호 「2017년 공단규정 일제정비 계획」
- 이사회운영규정 제7조(기능) 및 규정관리규정 제7조(입안), 제10조(절차)

## 2. 절 차 : 이사회 의결 후 공포·시행

# 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(제 안 요 지)

## 1. 개정이유

- 가. “사후추인”의 법적 효력 논란소지 최소화 및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선집행 후보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市 규정정비 컨설팅 권고사항을 이사회운영규정에 반영
- 나. 「민법」 제62조에 따라 당연직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“특정한 행위”를 대리하는 것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별지 위임장 서식 등 보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사후추인 요건 보완 :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 제2항
- 市 규정정비 컨설팅 권고사항 ①에 따라, 집행 후 추인이 가능한 경우를 매우 “구체적으로 제한”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
- 나. 위임장 서식 보완 : 별지 제5호 위임장 서식
- 권고사항 ②에 따라, 당연직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는 것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위임장에 “위임 범위” 명시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련근거

- 투자·출연기관 규정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후속조치 (市 공기업담당관-9317호, 2017.7.25.)
- 2017년 공단규정 일제정비 계획(기획조정실-5410호, 2017.8.4.)
- 이사회운영규정 제7조(기능) 및 규정관리규정 제7조(입안), 제10조(절차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이사항 없음

라. 절 차 : 이사회 의결 후 공포·시행

# 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이사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(의결방법의 특례)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.

② 이사장은 재난, 사고, 분쟁대응,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해가 발생하는 사안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이사회에 그 전말을 보고하여 그 추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0조의 2(의결권의 위임)의 “별지 제5호 서식”을 조문변동 없이 “별지 제5호 서식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8조(의결방법의 특례)</p> <p>① &lt;생략&gt;</p> <p>② 이사장은 <u>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</u> 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이사회에 그 전말을 보고하여 그 추인을 얻어야 한다.</p>	<p>제8조(의결방법의 특례)</p> <p>①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② 이사장은 <u>재난, 사고, 분쟁대응,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해가 발생하는 사안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</u>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이사회에 그 전말을 보고하여 그 추인을 얻어야 한다.</p>	
<p>제10조의 2(의결권 위임)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사정상 불가피하게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소속직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<u>별지 제5호 서식</u>에 의한 위임장을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0조의 2(의결권 위임)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사정상 불가피하게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소속직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<u>별지 제5호 서식</u>에 의한 위임장을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조문변동 없이 “별지제5호서식”만 변경 (별지 참조)</p>

[별 지]

〈별지 제5호 서식〉

**【현 행】**

**위 임 장**

본인은 다음의 소속직원이 제 회 이사회(20 . . .)에  
대리 출석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함.

대 리 인

직 위 :

성 명 :

년 월 일

위 임 자

직 위 :

성 명 : (인)

서울시설공단 이사회 의장 귀하

**【개 정 안】**

**위 임 장**

아래 위임인은 아래 대리인이 제 회 이사회(20 . . .)에 출석  
하여 위임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함.

**1. 위 임 인**

가. 성 명 :

나. 소속 및 직위 :

**2. 대 리 인**

가. 성 명 :

나. 소속 및 직위 :

**3. 위임의 범위**

년 월 일

위 위임인 : (인)

서울시설공단 이사회 의장 귀하